

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	
	2018년 2월 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8(목) 오전 11시부터 보도 가능)		
배포일시	2018년 2월 8일(목)	담당부서	인증산업진흥과
담당과장	한상미 과장 (043-870-5500)	담당자	김동원 연구관 (043-870-5509)

혁신성장, 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인증으로
 - 신제품·신기술인증 혁신의 시작, 평가기관 선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허남용)은 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 인증 관련 신청서 접수, 심사, 사후관리 등을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 전담 기관으로 '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'를 선정했다.

< 신제품·신기술 인증제도 개요 >

-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된 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인증 제도는, 인증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를 유도하고,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지원
- '17년말 현재 신제품(NEP)인증 130개사 134품목, 신기술(NET)인증 165개사 182개 기술이 유효기간 내 품목으로 관리 중

- 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인증을 받은 경우, 정부의 판로지원 등에 힘입어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제품·신기술의 원활한 초기 시장진입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,
 - 국내 공공구매에 의존한 동종 기업간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 인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.
- 이에따라, 정부는 인증 제도를 혁신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과제라 판단해,
 - 범정부 민간위탁 개선방향에 맞추어 지난해 9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

- 1 -



- 인증 평가기관을 기존의 지정 방식에서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.
- 이에 따라, 공모('17.12.5~'18.1.5)를 통해 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인증 평가관련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, 학계·법조계,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.
- 정부는 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인증 업무를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 기관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- 아울러, 현장평가 방식 개선, 피평가자 의견 수렴 등 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 신청인들의 편의성 제고도 추진하여 인증 제도가 우리 중소기업에게 가깝고 유용한 제도가 되도록 하는 한편,
 -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인증 연장시 수출실적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등 인증 획득 기업이 국내 공공시장을 벗어나 해외로의 진출을 독려·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김동원 연구관 (☎ 043-870-55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신제품(NEP) 인증 제도 개요 

□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·인증하고, 판로확대를 지원

- * NEP : New Excellent Product
- **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9조 등

< 연간 신청 및 인증수 추이 >

구분	'13년		'14년		'15년		'16년		'17년	
	신청	인증								
건수	171	54	166	28	227	61	252	47	295	41

* '17년말기준 인증유효기관 內 품목은 130개사 134개 품목

□ 인증유효기간 : 3년(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)

□ 인증대상 및 절차

-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“신제품”일 것
- 국내 최초 개발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성능·품질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우수할 것
- 신청 ⇨ 인증평가위원회 ⇨ 현장심사 ⇨ 제품심사 ⇨ 인터넷 예고 ⇨ 인증심의위원회 ⇨ 인증서 발급 (90일 소요)

□ 지원내용

- 정부, 지자체, 공기업 등 공공기관 20% 이상 의무구매 지원 등

□ 성과

- 인증기업 중 97%정도가 중소기업으로 인증제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공공구매가 연간 200억원 이상 이루어지고 있음
- 인증기업 고용증가율도 '15년 4.6%, '16년 7.2% 증가하여 동 기간내 국내 제조업 고용 증가율** (3.3%, -2.5%)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·중견기업들의 자생력 확보에 크게 기여
- *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조사('16년말기준), ** 통계청 연간 고용동향('16년말기준)



참고2 신기술(NET) 인증 제도 개요 

□ 신기술인증은 기술인증이며, 국내 최초 개발(대체) 기술로써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고,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 요건

- * NET : New Excellent Technology
- **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8조의2 등
- *** NET는 8개 부처에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총 10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 중

< 연간 신청 및 인증수 추이 >

구분	'13년		'14년		'15년		'16년		'17년	
	신청	인증	신청	인증	신청	인증	신청	인증	신청	인증
건수	376	103	479	111	427	72	511	79	441	83

* '17년말기준 인증유효기관 內 품목은 165개사 182개 품목

□ 인증유효기간 : 3년(3년 이내 기간으로 1회 연장 가능)

□ 인증대상 및 절차

-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, 시험·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
-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 또는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- 신청 ⇨ 전문분과위원회 ⇨ 현장심사 ⇨ 종합심사위원회 ⇨ 인터넷 예고 ⇨ 인증서 발급 (120일 소요)

□ 지원내용

- 신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중 10% 이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등

□ 성과

- 인증기업 중 54%가 중소기업으로, 인증 후 상용화 완료 기술은 50% 내외이며 37%정도의 기술이 상용화 진행 중
- 제품 개발에 앞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단으로, 제품 상용화를 통해 인증 획득 기업의 절반정도가 매출액이 증가*
- *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('16년말기준)